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20가단266461 주권인도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우, 이승용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상현, 오윤경, 이정현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40,000주를 포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염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5. 9.경 피고에 입사하여 재무담당 상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7. 3. 30.경 퇴사하였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및 부여계약

1) 피고는 2014. 3. 21.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및 관계사 임직원 5명에게 행사기간을 2016. 3. 22.부터 2019. 3. 21.까지로 정하여 행사사격 4,270원에 보통주식 360,000주(그 중 원고는 4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14. 3. 21. 원고와 사이에 위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4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스톡옵션 부여가격) 1주당 4,270원

제2조(스톡옵션 부여주식수) 보통주 40,000주

제3조(스톡옵션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법은 스톡옵션 행사시 이사회가 결정

①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할 주식(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① 원고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단, 원고가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스톡옵션 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시 별도 양식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신청한다. 신청 기준일은 서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시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법 중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스톡옵션 행사사격의 기준은 부여일(201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500원)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 ④ 신주교부시 원고는 그 대금(부여주식수)(부여가격/주당)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는 주식대금 수령 즉시(스톡옵션 행사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차액보상 또는 차액에 대한 시가주식교부는 5일 이내에 이사회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는 다음의 경우 정관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
-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스톡옵션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원고의 피고 등에서의 재직 및 퇴직**

1) 원고는 2013. 3. 22.경부터 2017. 3. 30.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2009. 6. 29.경부터 2017. 3. 27.경까지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5. 3. 6.경부터 2017. 3. 23.경까지 피고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7. 3.경 위 3개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제1조(신분)**

- 1. C는 원고가 2017. 3. 24.부터 2019. 3. 24.까지 재임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제2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 2. 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2. 31.까지 임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제2조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제1조 제2항의 임직원 신분 기간 동안 C의 근무처에 출근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 제2조(퇴직위로금)

C는 세전 총액 일금 2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2017년 4월-12월 : 세전 총액 1억 5백만 원을 9로 나눈 금액(11,666,667원)을 9개월간 매월 정산하여 익월 5일 지급한다.

2. 2018. 1. 5. : 세전총액 1억 7,500만 원을 일시불로 2018. 1. 5. 지급한다.

#### 제6조(스톡옵션)

1. C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스톡옵션(4만 주)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분유지기간 2017. 12. 31.까지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기타사항)

3.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사(동종의 업체 또는 동일제품 및 직간접 관련제품 업체 포함)에 위업하지 않는다.

### 라. 원고의 타 회사 취업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경과

1) 원고는 2017. 5. 8.경 피고 대표이사의 매제인 E가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취업하였는데, F은 2014. 7.경 피고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분사받은 업체이나 2017.경에는 피고나 C 등이 생산하는 물품과 동일한 품종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

2) 원고는 퇴직 전인 2017. 12. 15.경 피고의 재무이사이자 공시책임 임원이 G 상무에게 "현재 보유중인 스톡옵션(4만주)를 행사하고자 오늘(12/15)로 그 의사표시를 하니,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C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3) 이에 피고 경영진은 원고가 C에 재직 중에 있으면서 경쟁업체라 할 수 있는 F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원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중복취업 기간 동안 지급했던 보수의 반환 여부, 장래 지급할 퇴직위로금 지급 여부, 원



고의 스톡옵션 행사 여부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급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 다음, 피고의 G 이사가 2017. 12. 19.경 원고에게 "원고의 중복취업으로 인하여 스톡옵션 행사는 불승인 되었다"는 취지를 알렸고, 2017. 12. 22.경에는 원고가 요청한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내용만 반영한 '원고 퇴직위로금 지급 진행'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수령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고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8. 3. 23.경 이사회 결의로 원고의 퇴직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5)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H 변호사는 2020. 8. 24.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보유 중인 자사주 40,000주를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권인도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스톡옵션 행사 방법에 따른 별도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 중에도 원고와 같이 피고 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톡옵션 행사를 통보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사한 스톡옵션을 피고가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에 관한 것이 아닌 갑 제1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인 2019. 3. 2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스톡옵션 방법에 따라 별도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이메일을 적법한 스톡옵션 행사로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앞서 본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원고의 이중취업 문제로 인하여 퇴직위로금 수령 여부가 문제되자 당시 퇴직위로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던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감안하여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준